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4. 1 선고 2020가단24503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

담당변호사 김봉학

변론 종결2021. 2. 18.

판결 선고2021. 4. 1.

주 문

1. 별지 1 목록 및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17. 8. 24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B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7. 8. 25. 접수 제25367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B는 2017. 8. 17.경 전주시 완산구 C, D, E 토지(이하 '양도소득세 대상 토지'라고 한다)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, 납부하지 않았으므로, 원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B에게 2019. 12. 31.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5,251,510원을 고지하였는데,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.

(단위 : 원)

양도소득세	2017	2017. 8. 31.	2019. 12. 31	65,251,510	69,655,950
-------	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

나. B는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2017. 8. 25. 접수 제25367호로 등기원인을 '2017. 8. 24. 증여'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고 한다)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피고는 B의 딸로서 2015. 7. 8.부터 서울 강서구 F건물, G호에서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.

다. 한편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.

(단위 : 원)

계	-16,603,691		
예금	H은행 논산부지부	82,837	예금조회잔액
I조합 우장산역지점	4		
J은행	346,167		
K은행	14,224		
부동산	L조합	11,027	
충청남도 논산시 M	19,822,000	개별공시지가	별지1 목록기재부동산
충청남도 논산시 N	25,766,000	개별공시지가	
충청남도 논산시 O	7,010,000	개별공시지가	별지2 목록기재부동산
적극재산 계	53,052,259		
국세채무	양도소득세 체납 1건	69,655,950	

계	-16,603,691		
소극재산 계	69,655,950		

[인정근거]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, 을 제1호증, 을 제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).

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17. 8. 17.경 양도소득세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, 이 사건 증여계약 직후인 2017. 8. 31.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화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의 원고의 조세채권 69,655,950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2)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,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소액의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, B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거나 그러한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(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다237192 판결,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피고는 먼저, 원고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, 을 제1호증, 을 제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19. 6. 17.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5다247707 판결,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피고는 다시, B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, 피고는 위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송인권

별지